

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6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6월 15일)  
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상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 정비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(안 제 1조).
- 제1조의3 → 제1조의 4, 제1조의4 → 제1조의5
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).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법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?	○ 생활보장위원회 근거 조례가 없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함. (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)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조의3 및 제1조의4”를 “제1조의4 및 제1조의5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조의4제2항”을 “제1조의5제2항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96호
의결 년월일	2010. 6. 18 (제161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6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 정비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(안 제1조).
  - 제1조의3 → 제1조의 4, 제1조의4 → 제1조의5
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협의체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3조).

#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조의3 및 제1조의4”를 “제1조의4 및 제1조의5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조의4제2항”을 “제1조의5제2항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<u>제1조의3</u> 및 <u>제1조의4</u>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(생략) 1.~4. (생략) 5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<u>처리할 사항</u> 6. (생략)</p> <p>제5조(실무협의체) ① (생략)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<u>제1조의4</u> <u>제2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<u>제1조의4</u> 및 <u>제1조의5</u>에 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&lt;삭 제&gt; 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실무협의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제1조의5</u> <u>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